요양기관 현황관리 업무 안내

2010.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의 료 자 원 실

-◈ 목 차 ◈-

Ⅰ.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제출 ····· 1

Ⅱ. 요양기관 현황 관련 홈페이지 접속 ····· 1

Ⅲ. 요양기관 현황관리 관련 전화 및 팩스번호 ····· 1

Ⅳ. 요양기관 현황관리(개설·폐업·변경) 방법 ····· 4

Ⅴ. 요양기관 각종 차등제 현황 제출 ····· 8

※ 별첨 : 요양기관 현황관리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 ····· 9

Ⅰ.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제출처
○ 요양기관 개설(요양기호 부여)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요양기관 변경(폐업)사항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 폐업은 폐업사실 확인서 첨부	○ 개설은 개설허가(신고필)증·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 즉시 또는 변경 및 폐업은 15일 이내	○본원(本院 : 자원관리부, 의료장비부) - 종합병원 이상, 치과대학병원, 한방병원 ○지원(支院 : 운영부) -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 각종 차등제 현황 제출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 요양병원 입원료 - 의료급여정신과 입원료 ○ 입원환자식 가산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 매분기 마지막 달 16~20일까지 ○ 중환자실, 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 매분기 마지막 달 15일~20일까지 ○ 입원환자 가산 변경 인력을 다음 달 15일까지	

Ⅱ. 요양기관 현황 관련 홈페이지 접속

구 분	위 치	비 고
○ 개설 및 폐업 절차 - 요양기관 기호 부여, 변경(폐업)	○ www.hira.or.kr/요양기관 종합업무/심사종합/개설 및 폐업 안내	○ 요양기관 개설·폐업·변경 등 업무처리 과정 안내
○ 요양기관 현황 제출 서식 - 현황(변경) 통보서 및 첨부 서류	○ www.hira.or.kr/요양기관 종합업무/심사종합/서식 자료실	○ 요양기관 현황, 각종 차등제 관련 서식 제공
○ 요양기관 현황 관련 각종 업무처리	○ www.hira.or.kr/요양기관 종합업무/현황변경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요양기관 개설 등 실제 업무처리 - 국민회원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Ⅲ. 요양기관 현황관리 관련 전화 및 팩스번호

□ 전화문의 및 안내 :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 본원 담당부서 팩스 번호

담당부서	팩스번호	담당업무	세부담당업무
자원관리부	02-6710-5749	자원관리부 대표번호	
	02-6710-5750	요양기관 개설, 변경(폐업) 등	요양기관 개설, 폐업
	02-6710-5751		요양기관 현황변경(인력, 시설)
	02-6710-5752	각종 차등제 및 입원환자식 산정 등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관련
	02-6710-5753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등급 관련
	02-6710-5754		입원환자식 관련
	02-6710-5755		의료급여 정신과 등급 산정 등
	02-6710-5757		현지 확인(인력, 시설) 사후정산 관련
	02-6710-5758	요양기관 업무분야별 현황	응급의료기관, 개방병원, 시설, 공동이용기관 등
의료장비부	02-6710-5759	의료장비부 대표번호	
	02-6710-5760	요양기관 현황관리(의료장비)	의료장비 신고(기준 및 등록)
	02-6710-5761		의료장비 관련 민원
	02-6710-5762		의료장비 전산심사 관련
	02-6710-5763		우선관리대상 의료장비 관련

□ 지원 담당부서 팩스 번호

담당부서	팩스번호	담당업무	세부담당업무
서울지원 운영부	02-6711-8400	운영부 대표번호	
	02-6711-8403	요양기관 현황관리	개설
	02-6711-8404		폐업
	02-6711-8405		간호등급
	02-6711-8406		변경
	02-6711-8407		사후관리
부산지원 운영부	051-710-2850	운영부 대표번호	운영부 대표번호
	051-710-2854	요양기관 현황관리	요양기관 현황 업무(물리치료 산정)
	051-710-2852		요양기관 현황 업무(입원료 차등제)
	051-710-2853~5		요양기관 현황 업무(개설・폐업・변경)
대구지원 운영부	053-710-3850	운영부 대표번호	
	053-710-3854	요양기관 현황관리	대구, 경북, 요양병원
광주지원	062-710-4850	운영부 대표번호	

담당부서	팩스번호	담당업무	세부담당업무
운영부	062-710-4852	요양기관 현황관리	개설・폐업・변경(광주, 전남 의원 및 보건기관 등)
	062-710-4853		개설・폐업・변경(치과)
	062-710-4854		개설・폐업・변경(한의원, 약국)
	062-710-4855		개설・폐업・변경(전북 의원 및 보건기관)
	062-710-4856		입원환자 식대 및 이학요법료 관리, 이의신청, 정산 등
	062-710-4857		개설・폐업・변경(병원, 요양병원)
대전지원 운영부	042-710-5850	운영부 대표번호	
	042-710-5851	요양기관 현황관리	요양기관 개설・폐업(충남・북)
	042-710-5852		요양기관 개설(대전), 변경(충북), 간호등급
	042-710-5853		요양기관 현황 변경(대전), 입원환자식
	042-710-5854		요양기관 현황 변경(충남), 간호등급
	042-710-5855		요양기관 현황관련 정산업무
수원지원 운영부	031-8007-3340	운영부 대표번호	
	031-8007-3342	요양기관 현황관리	지역 : 고양, 안산, 파주, 이천, 양평, 동두천, 가평, 김포, 하남, 연천
	031-8007-3343		지역 : 용인, 안양, 군포, 구리, 의왕, 여주, 포천, 시흥, 양주
	031-8007-3344		지역 : 성남, 평택, 화성, 안성, 하남, 과천, 남양주, 광주
	031-8007-3345		지역 : 수원, 부천, 의정부, 광명, 오산, 의정부
	031-8007-3346		입원 환자식, 간호관리료 등급, 의료급여 정신과 등급산정, 이학요법료 관리
	031-8007-3347		요양기관 현황관련 정산업무
창원지원 운영부	055-713-7850	운영부 대표번호	
	055-713-7852	요양기관 현황관리	지역: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양산시, 거제시, 밀양시,창녕군, 합천군, 함안군
	055-713-7853		지역: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고성군,함양군, 의령군
	055-713-7854		지역: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중구, 울산북구, 울산울주,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055-713-7855~6		요양병원: 개설・변경・폐업, 입원환자식대, 차등제 산정

Ⅳ. 요양기관 현황관리(개설·폐업·변경) 방법

□ 요양기관 기호부여

○ 제출방법

인터넷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로그인 ⇒ 요양기관종합업무 ⇒ "현황변경관련" ⇒ "기호부여" ⇒ 요양기관 기호부여 필수항목 입력(대표자주민번호) ⇒ 기호부여 신청항목 선택 ⇒ 보건의료 연계정보 조회 검색 ⇒ 기본, 인력1, 인력2, 진료과목, 인력3 작성 후 저장 ⇒ 구비서류 및 최종제출 화면으로 이동 후 최종제출 **※ 국민회원가입 및 기호를 부여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우편	○ "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관련서식: 홈페이지 ⇒ 요양기관종합업무 ⇒ "심사종합" ⇒ "서식자료실" ⇒ 1.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접수 : 관할 본·지원

◆ 인터넷을 이용한 제출

기 본	○ 개설(신고필증)허가증상의 주 개설자 1인을 기본사항에 입력 ⇒ 저장 후 다음 탭으로 이동 ※ 요양병원으로 허가받은 병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인지 여부 체크 필요 ※ 병실병상 : 신고(허가)사항에 특수진료실 및 집중치료실이 포함된 경우 '비고'란에 기재 ※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 - 개인이 단독으로 개설한 경우: 개설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력 - 개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경우 : 주 개설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력 - 개인 개설이 아닌 경우 : 법인명의 또는 요양기관 명의 등의 계좌로만 입력
인 력	○ 인력1(의약사) 등록/저장 후 다음 탭으로 이동, 인력2(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록/저장후 다음탭으로 이동, 진료과목 등록 /저장 후 다음 탭으로 이동, 인력3(인원수만 입력)/저장 후 다음 탭으로 이동 ⇒ "구비서류 및 최종제출"/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업로드 ⇒ "최종제출" ※ 인력1, 2는 인력의 세부사항 입력, 인력3은 인원수만 입력 ※ 비상근자는 "구비서류 및 최종제출" 클릭 후 나타나는 "비상근내역 및 전달사항"에 근무내역 입력 ※ 비상근 : 주3일 이상 주20시간 이상(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비상근 불인정) ※ 입사자가 전 근무기관 미퇴사시 전 기관에 퇴사신청 요청 후 신고
진료과목	○ 개설(신고필증)허가증상의 기재된 진료과목을 입력
장 비	○ 기호를 부여 받은 후에 요양기관종합업무 ⇒ "현황변경관련" 또는 Hira Plus Web ⇒ "현황변경(장비)"화면에서 통보

□ 요양기관 폐업

○ 제출방법

인터넷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Hira Plus Web ⇒ "현황변경관련"⇒ "폐업통보" 작성 후 최종제출
우편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와 관할보건소 발행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개설신고필(허가 증)·등록증 이면기재사항의 대표자 변경내역 또는 관할보건소 발행 폐업수리통지서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관련서식: 홈페이지 ⇒ 요양기관종합업무 ⇒ "심사종합" ⇒ "서식자료실" ⇒ 2.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 접수 : 심사관할 본·지원

◆ 인터넷을 이용한 제출

폐 업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Hira Plus Web"⇒ "현황변경관련"⇒ "폐업통보"란에서 - 폐업일, 폐업사유, 폐업후 연락처 입력 - 관할보건소발행 발행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개설신고필(허가 증)·등록증 이면기재사항의 대표자 변경내역 또는 관할보건소 발행 폐업수리통지서 1부 파일 업로드 후 최종제출 ※ 폐업일자는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로 입력 - 요양기관에서는 폐업일 전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다만,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에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사본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 다음날로 입력 - 요양기관 폐업일과 재개설일이 동일한 경우 폐업일자는 해당일로 입력 예) 요양기관 폐업일과 재개설일이 각각 2010. 1. 1일인 경우 폐업일과 재개설일이 2010. 1. 1일로 입력

□ 요양기관 현황 변경

❍ 제출 방법

인터넷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요양기관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종합업무(또는 Hira Plus Web)⇒"현황변경관련" ⇒ "현황변경" ⇒ 작성 및 저장 후 최종제출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우편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의료장비별 세부내역서"(장비의 경우)와 첨부서류를 우편 접수 ❍ 관련서식 : 홈페이지 ⇒ 요양기관종합업무 ⇒ "심사종합" ⇒ "서식자료실" ⇒ 2.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 ❍ 본원 및 각 지원 주소 - 본원 자원관리부, 의료장비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1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137-060) - 서울지원 운영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번지 단암빌딩 14, 24~5층 (100-704) - 부산지원 운영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5동 701-1번지 더웰타워 14~16층 (611-839)

	- 대구지원 운영부 :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100번지 신성미소시티 2층(700-082) - 광주지원 운영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8-8(506-813) - 대전지원 운영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아너스빌딩 4층(302-831) - 수원지원 운영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7-10 경기도체육회관 5, 6층(440-831) - 창원지원 운영부 :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2층(641-969)

◆ 인터넷을 이용한 제출방법

기본	주소 기타	❍ 현황변경(기본) ⇒ 변경하고 싶은 부분에 체크 표시 후 정보 입력 ⇒ 최종제출

인력	1)입사	❍ 현황변경(인력) ⇒ 인력1(의약사), 인력2(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인력3(간호사 등 기타)중 선택 ⇒ 연두색 "입사 키" 클릭 후 나타나는 칸에 입력⇒ "저장" ⇒ "구비서류및최종제출" 클릭 후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 ⇒ 연두색 "최종제출" 반드시 클릭 ⇒ 현황변경 제출완료 확인 ※ 인력1, 2는 인력의 세부사항 입력, 인력3은 인원수만 입력 ※ 상근 : 주5일 이상 주40시간 이상(물리치료사는 4대 보험 가입되어야 함) ※ 비상근 : 주3일 이상 주20시간 이상(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비상근 불인정) - 비상근자는 "구비서류 및 최종제출" 클릭 후 나타나는 "비상근내역 및 전달사항"에 인적사항과 근무일 입력 ※ 입사자가 전 근무기관 미퇴사 시 전 기관에 퇴사신청 요청 후 신고
	2)퇴사	❍ 등록된 인력 성명 옆의 "퇴사신청" 클릭 ⇒ 최종근무일(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 입력 후 저장 ⇒ 저장 후 "구비서류 및 최종제출" ⇒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 ⇒ 연두색 "최종제출" 반드시 클릭 ⇒ 현황변경 제출완료 확인
	3)대진	❍ 입사신고와 동일하나, "근무형태"에서 "대진의(대진약사)"선택 ⇒ 입사일자와 최종근무일자를 기재 ⇒ "구비서류 및 최종제출 반드시 클릭 ⇒ 현황변경 제출완료 확인
	4)휴가	❍ "비상근내역 및 전달사항"에 휴가자 인적사항과 휴가기간 입력 ⇒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 ⇒ 연두색 "최종제출" 반드시 클릭 ⇒ 현황변경 제출완료 확인

◆ 신고시 제출서류

변 경 사 항		구 비 서 류
(1)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 개설자(대표자)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앞뒷면) 사본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추가
(2) 소재지	개설신고필증 관할구역 내 이전	○개설신고필증(앞뒷면) 사본 1부
	개설신고필증 관할구역 외 이전 ☞ 폐업 후 재개설(변경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1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폐업사실 확인(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보건기관은 제외), 통장사본 1부
	개설신고필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 폐업 후 재개설 + 기호 재부여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사본 1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폐업사실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보건기관은 제외), 통장사본 1부.
(3)의료기관 종별 또는 설립형태 ☞ 폐업 후 재개설 + 기호 재부여		

<table>
<tr><td colspan="2">(4)인력</td><td>인력Ⅰ
인력Ⅱ
인력Ⅲ</td><td>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td><td>○면허증, 자격증 사본 1부(신규 면허자에 한하여)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증(보바스, TPI) 사본 1부
※ 대진의 : 개설신고필증(앞뒷면) 사본1부(보건소 대진신고 등재된)
※ 대진약사: 첨부서류 생략</td></tr>
<tr><td colspan="5">(5)의료장비</td><td>○증빙자료 목록 중 장비유형 구분에 따른 서류 각 사본 1부</td></tr>
<tr><td rowspan="5">장비유형</td><td colspan="3">**일반**장비</td><td>1</td><td rowspan="5">1. 품목허가증(식약청),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등)
2. 정상가동일 확인서, PACS 장비현황표, 시스템구성도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
4.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5. 검사필증(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검사성적서
6. 방사선동위원소 시설검사 및 결과통보(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 허가증
※ 중고, 양도양수 :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양도필증으로 구입증빙, 품목허가증 같음
※ 신규장비 등록 시 "식약청 정보조회 활용할 경우품목 허가증 제외, 구입증빙자료만 제출</td></tr>
<tr><td colspan="3">**일반방사선발생**장치</td><td>1</td></tr>
<tr><td>기타</td><td colspan="2">FULL PACS(78)</td><td></td></tr>
<tr><td rowspan="2">**특수**</td><td colspan="2">맘모(77), CT(87)</td><td></td></tr>
<tr><td colspan="2">MRI(88)</td><td></td></tr>
<tr><td colspan="3">**원자력법에 의한 장비**</td><td>1, 6</td></tr>
<tr><td colspan="5">(6)병실수 및 병상수</td><td>○개설허가(신고증명서) 앞, 뒷면 사본 1부</td></tr>
<tr><td colspan="5">(7)휴업과 재개업</td><td>○**보건소 발행** 휴업 또는 재개업 사실확인서 1부
※ 보험급여청구는 휴업사실확인서상의 휴업일 전일까지 가능함</td></tr>
<tr><td colspan="5">(8)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인터넷 접수 불가)</td><td>○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3월 내)
○개설자 명의 통장사본 1부(CMA는 연결계좌기재 카드사본)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대표자 날인에 반드시 인감 날인</td></tr>
<tr><td colspan="5">(9)사업자등록번호 변경</td><td>○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td></tr>
<tr><td colspan="5">(10)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td><td>○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지정)서 또는 취소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장비</td><td>**1)신규**</td><td>❍ 현황변경(장비) ⇒ "신규장비등록"클릭 ⇒ "장비분류 선택" ⇒ "장비번호 선택" ⇒ 후 나타나는 창에 "식약청정보조회" 클릭하여 "모델명" 또는 "품목허가증의 품목허가번호(왼쪽 위)"입력하여 조회 ⇒ 해당장비명 더블 클릭하여 정보를 자동 셋팅⇒ 이외 사항은 직접입력 ⇒ "저장" 후 "구비서류 및 최종제출" ⇒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 ⇒ 연두색 "최종제출" 반드시 클릭 ⇒ 현황변경 제출완료
※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보건기관 신고내역 조회"
※ 동일 장비가 수개일 경우 개개 장비별로 등록하여야 함(제조번호 각각 입력)</td></tr>
<tr><td>**2)변경**</td><td>❍ 현황변경(장비) ⇒ 해당장비의 품목명 및 형명(모델명)을 클릭⇒현황변경(장비)의 창이 나타나면 변경사항 입력 ⇒ "저장 후 구비서류 및 최종제출" ⇒ 연두색 "최종제출" 반드시 클릭 ⇒ 현황변경 제출완료</td></tr>
<tr><td>**3)사용중지**</td><td>❍ 현황변경(장비) ⇒ 해당장비의 사용중지할 경우 품목명 및 형명(모델명) ⇒ 현황변경(장비)의 창이 나타나면 "기타"의 "사용중지 구분"에서 "폐기 양도" 등을 선택한 후 "사용중지일자" 입력 ⇒ "저장" 후 구비서류 및 최종제출 ⇒ 연두색 "최종제출" 반드시 클릭 ⇒ 현황변경 제출완료 확인
※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시고 및 시군구에 신고 후 사용중지 신청</td></tr>
</table>

V. 요양기관 각종 차등제 현황 제출

□ 제출방법

○ 분기별

일반병동 간호관리 차등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로그인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각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건강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20일까지 제출(신고)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로그인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각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건강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20일까지 제출(신고)
의료급여 정신과입원료 차등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로그인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각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건강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20일까지 제출(신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로그인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각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건강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20일까지 제출(신고)
입원환자 운영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로그인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입원환자 운영현황 통보⇒각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건강심사평가원에 익월 15일까지 제출(신고)

○ 수시

신규 및 변경 발생시	❍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전담의 산정현황 통보서, 정신보건전문요원 현황 통보서, 입원환자식 운영현황통보서 등 ❍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

(별첨)

요양기관 현황관리 다빈도 문의 및 답변 내용

인력, 시설분야 문의 답변

문1	**대진의 신고방법은?**
답	- 보건소에 의사신고 후 심평원에 현황변경 신고함
문2	**입·퇴사가 동시 이루어진 경우 신고방법은?**
답	- 입사신고 현황확인 후 퇴사신고 또는 입사 신고와 함께 최종제출화면에 있는 전달사항란에 퇴사일자 기재
문3	**주(부)개설자가 비전속 진료가능 여부**
답	비전속 진료도 가능함. - 의료기관의 개설자(공동개설자)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상주 진료함이 원칙이나, 의료기관 이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0.5인으로 가능함.
문4	**간호인력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답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복지부 고시)
문5	**개설자 변경 시 필요서류?**
답	1. 요양기관현황통보서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약국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 사본 5. 폐업사실확인서 사본
문6	**퇴사 처리 여부?**
답	- 관할 본원(자원관리부) 또는 각 지원(운영부)에 문의
문7	**우편자료 도착 여부?**
답	- 관할 본원(자원관리부) 또는 지원(운영부)에 문의
문8	**합격증이 나와도 신고가 가능한지?**
답	- 불가능(면허발급 이후 가능)
문9	**영양사, 조리사 가산 관련 등 언제부터 입사하면 몇 월부터 가산 적용 되는지?**
답	-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를 당월에 적용하므로 입사일로부터 2개월 후에 적용 (예 : 6월 1일 입사 → 8월 적용, 6월 2일~말일 중 입사 → 9월 적용)
문10	**대표자 사망 후 계좌 변경 관련 문의**
답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상속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상속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상속자(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제적자 포함, 개설자가 사망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공증을 받은 진료비용 상속 포기각서(상속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원본 - 통장사본
문11	**대진약사 신고는 일자로 신고하는 부분인데 2시간 근무 부분도 신고해야 하는지?**
답	- 기타로 신고 가능함
문12	**공공기관에서 무료진료소 기호부여 받으려고 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하지 않으나 결핵환자 등록을 위해 기호부여를 받아야 하는지?**
답	-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호부여를 받지 않아도 되나, 의료법 제15조 및 건강보험법 제40조제4항 의거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며, 의료법 제89조에 의거 거부할 경우 벌칙이 있음

문13	**요양기관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폐업사실 확인서를 공문으로 대체 가능한지?**
답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와 폐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폐업사실확인서 : 보건소 정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제출함)
문14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를 서면으로 했을 경우 히라플러스 웹에서 확인 가능한지?**
답	- 현황변경 신고를 서면으로 했어도 히라플러스웹에서 변경사항 확인 가능
문15	**요양기관이나 청구를 안 할 경우에도 꼭 요양기관기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지?**
답	-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호부여를 받지 않아도 되나, 의료법제15조 및 건강보험법 제40조제4항 의거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며, 의료법제89조에 의거 거부할 경우 벌칙이 있음.
문16	**퇴직한 요양기관이 연락 두절되어 퇴사처리가 안될 때 처리방법?**
답	- 퇴직 요양기관에서 근무 이력에 대한 본인확인서 제출 후 확인하여 퇴사처리
문17	**2명의 의사가 상근하고 있으나 1명의 의사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일을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	- 건강보험법상 상근은 주5일이상 40시간이상, 비상근은 주3일이상 20시간이상이며, 이외는 기타로 신고함
문18	**선택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 종별의 제한이 있는지?**
답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있음(의료법제46조제1항)
문19	**간호관리료 등급 신고 시 수술실, 응급실 간호사도 포함하는지?**
답	- 불포함
문20	**의과와 한방과로 나어져 있던 요양기관 기호를 하나로 통합 할 때 필요서류 등**
답	의과와 한방과중 폐쇄할 요양기관이 보건소에 폐업신고하고, 계속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과목 추가신고 후 심평원에 신고 - 폐업 요양기관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폐업사실확인서 - 진료과목 추가할 요양기관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문21	**공동개설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표시되는 개설인과 개설신고필증의 개설인이 상이(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개설인 외 1인으로 표시되지만 개설신고필증에는 공동개설인 모두 표시됨)한데 주개설자 기준 문의**
답	- 공동개설자의 경우 주대표자는 개설신고필증상에 1순위로 함
문22	**조리사 면허증은 병원을 입·퇴사 할 때마다 새로 받아야 하는지?**
답	- 조리사 면허증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함 - 조리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경우는 조리사 면허증번호가 발급처별로 동일한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조리사 면허증이 아닌 국가기술자격증 번호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발급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 입사기관에서 면허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료됨
문23	**당일 기호를 부여받고 청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요양급여비용 계좌 변경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	- 기호부여 당일에 계좌변경 시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무방함
문24	**심사평가원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요양급여비용 미지급분이 남아 있어 계좌변경 가능한지?**
답	- 폐업신고 후 계좌변경 가능함
문25	**요양기관 주개설자의 이름을 개명하였을 경우 계좌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답	- 개인개설인 경우 주개설자의 이름과 진료비지급계좌의 예금주명이 동일해야함
문26	**'95년도에 TPI 이수증 신고를 했는데 갱신을 하여야 하는지?**
답	- 동일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불필요
문27	**CMA계좌로 요양급여비용계좌를 변경할 경우 어떤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답	- 연결은행 계좌번호로 신고
문28	**기존에 오래된 구급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입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지?**
답	- 관할 지역 보건소에 문의 하여야 함

문29	**요양기관 개설 후 기관기호 부여 신청하지 않아도 제제가 없는지?**
답	-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호부여를 받지 않아도 되나, 의료법제15조 및 건강보험법 제40조제4항 의거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며, 의료법제89조에 의거 거부할 경우 벌칙이 있음
문30	**선택진료 의료기관 지정 신청 시 전체의사수는 재직 중인 총 의사수(인턴, 레지던트 포함) 기재한다면 인턴을 여러 과를 담당하는데 어느 진료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답	- 인턴과 레지던트의 경우는 진료과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만 신고하면 됨 (진료가능의사에 인턴과 레지던트가 포함되는 경우는 꼭 신고)
문31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변경통보서상의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는 진료 가능 의사수를 기준으로 기재하는지, 아니면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 가능 의사수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답	-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의사가 있는 진료과목은 모두 기재해야 함
문32	**선택진료확인통보서 작성 시 적용일자는 어떤 날짜로 기재하는지?**
답	- 진료과목마다 선택진료 의사가 변경되는 일자를 기재(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문33	**외국인이 주 개설자인 경우 개설신고방법은?**
답	-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상의 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재하며, 관할 보건소에 개설신고 후 심평원에 신고함
문34	**조리사가 12일 동안 휴가를 갈 경우 신고여부?**
답	- 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 휴가 시 동 기간동안을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16일 이상 휴가 시 신고
문35	**양방 개원하고 한방면허를 취득 진료를 원할 경우 절차는?**
답	- 복수의료기관개설지침에 의거 복수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경우에는「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2부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하 하고,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원에 한방 개설신고를 하여야함. 요양기관기호는 각각 부여됨
문36	**공중보건의는 진료 배정받은 보건지소마다 의사현황등록을 해야 하는데 근무형태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답	- 공중보건의 신고 시 근무형태는 보건으로 신고
문37	**현재 성형외과를 운영 중으로 피부과 전문의를 취득하여 진료과목을 추가할 경우 신고방법은?**
답	- 보건소에 진료과목 신고 후 심평원에 현황변경통보서와 개설신고필증(허가, 등록) 제출
문38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발급 전에 의사의 면허정지, 업무정지 이력 등을 확인하는 부서가 있는지?**
답	- 개설신고 시 관할 보건소 담당부서(보건소마다 부서명칭이 다름)에서 확인함
문39	**외국인 관리약사를 고용해도 상관없는지?**
답	-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는 가능함
문40	**법인 요양기관이 분점 개설 신고 시 개설자 지정 방법은?**
답	- 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으로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문41	**약사가 두 명인 약국에서 한 명의 약사가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지?**
답	- 행정처분청(관할 시·도·군 보건소 및 복지부)에 문의
문42	**급여비용계좌 변경 시 첨부서류 중 개설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은 발급일자 상관없이 첨부 가능한지?**
답	- 3개월 이내 발행
문43	**요양병원의 간호등급 산정 시 휴가자의 휴가기간은?**
답	- 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는 산정제외
문44	**개설신고(허가)필증과 등록증이 동일한 의미인지?**
답	-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신고"라 함은 사인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 신고의 종류에는 "**자기완결적 신고**" 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는데, 자기완결적인 신고는 신고의 요건만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가 수리되어

	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고, 등록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한 사인들에게 새로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되고 그것은 단순히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임 - 의료법상의 신고와 약사법상의 등록의 개념을 달리한다는 전제임
문45	**요양기관 폐업 시 직원의 퇴사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답	- 폐업신고 시 요양기관의 모든 인력·시설·장비는 폐업일로부터 종료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음
문46	**물리치료사가(4대보험 미가입) 휴가 시 현황변경신고 전에 반드시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답	- 휴가신고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음
문47	**의사인력 신고 시 4대보험 미신고하고 심평원에 인력 신고 할 경우 법적 제제여부?**
답	- 의사 입사신고 할 경우 4대보험 신고유무는 적용하지 않으나, 현지확인시 근무형태를 확인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문48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처럼 장애인지원금 지급 계좌도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답	- 우리원에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만 신고하면 됨.
문49	**A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B 의료기관으로 2개월간 파견근무 보낼 때 신고방법은?**
답	- 의료인력 현황신고 같은 방법으로 입사 신고 후 기간 도달하는 시점에 퇴사신고
문50	**정신과의원은 병상수가 49병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답	- 정신과의원인 경우 49인 이하 입원 가능한 병실까지 가능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문51	**인천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한 요양기관이 기호부여 신청하였으나, 기호가 예전과 동일한 사유?**
답	- 요양기관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별, 요양기관종별로 구분하여 요양기관 각각에 대하여 요양기관기호를 부여하는데 지역별로 구분하기 위한 앞 2자리 숫자 중 인천, 경기는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음
문52	**선택식단 신고 후 즉시 가산 적용되는지?**
답	- 선택식단은 당해요양기관 영양사가 1인 이상 근무하고 1일 2식 이상의 선택식단을 최초 또는 변경제공한날부터 가산을 적용
문53	**선택식단 가산 시 첨부서류와 선택식단과 직영가산의 적용시점은?**
답	- 선택식단과 당해요양기관 영양사가 1인 이상 근무하고 1일 2식 이상의 선택식단을 최초 또는 변경제공한날부터 가산을 적용 - 직영가산은 당해요양기관 영양사가 1인 이상 근무하고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의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최초 또는 변경제공한날부터 가산을 산정 - 선택식단은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하며 1일 2식 이상의 선택식단을 제공한 요양기관은 전제 일반식에 대한 선택식단을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요양기관 영양사가 1인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함 또한 일반식은 1식당 밥, 국을 제외하고 4찬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문54	**대진약사 기간이 2년 동안 가능한지?**
답	- 봉직약사로 신고 가능
문55	**촉탁의 해지 신청방법은?**
답	- 촉탁의 계약(만료)서류와 함께 해지 신고
문56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소지자가 의료기관에 취업 가능한지?**
답	- 가능함
문57	**약국개설자가 근무약사를 두고 해외출국 시 현황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차등수가 적용되는지?**
답	- 1인 개설기관에 대해서는 개설자의 출입국내역을 확인하므로 근무약사 신고를 하여야 함
문58	**봉직의 휴가 신고방법은?**

답	- 현재 근무형태에 휴가가 없으므로 전달사항란에 봉직의사의 이력과 함께 휴가일 신고
문59	**개설 후 조리사 인력신고 시 이전 근무지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인력신고에 누락되어 추후에 추가 신청하면 최초신고 날짜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	- 당해 요양기관의 근무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초신고 날짜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음
문60	**병원의 임금체불로 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처리 해 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퇴직 신청 가능한지?**
답	- 현황변경신고는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신고하여야 함
문61	**“요양기관 종합업무 현황변경(인력) 1”에서 퇴사 신고 후 입사 처리하니 처리 대기 중으로 접수가 안 된다는 메시지가 뜸**
답	- 먼저 신고한 내역을 처리완료 하여야만 다음 신고내역을 접수할 수 있음
문62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하여 1등급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전문의 수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적용되는지?**
답	- 2010. 4. 1(2/4분기 적용)
문63	**동일건물에 사업자번호가 다른 2개의 병원이 한 개의 식당을 공동이용 가능한지?**
답	-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집단급식소 공동운영허가를 득하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 가능 - 급식시설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3 20. 그 밖의 시설”로 의료기관에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것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문64	**12/1일 입사 예정인 의사인력신고를 오늘 미리 신고가 가능한지?**
답	- 미리 입사신고는 가능하나 전 의료기관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함
문65	**A약국 오전근무하고 B약국 오후근무 시 각 약국에서 0.5인으로 산정해서 근무해도 되는지?**
답	- 봉직약사는 한약국에만 상근, 비상근, 기타로만 등록할 수 있음
문66	**공중보건의도 대진이 가능한 지?**
답	- 대진 불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부) 규정

의료장비 분야 답변

문1	**장비신고시 장비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검사장비,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이학요법장비, 수술 및 처치장비, 한방장비 5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용목적에 따라 해당장비 번호에 신청
문2	**의료기관에서 쓰는 장비분류와 심평원 인터넷에서 신고하는 장비분류가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	-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서식자료실→02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의료장비현황 및 세부내역통보서 작성방법에 따라 해당 장비번호에 신청
문3	**의료장비 번호 알려달라는 문의**
답	처리절차 안내 - 우리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서식자료실→02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의료장비현황 및 세부내역통보서 참고
문4	**장비 폐기시 심평원에 보내야 할 서류 문의**
답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해당 시·군·구에 신고(양도, 이전 등)토록 되어 있는바 시도, 시군구 정보연계로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며, 폐기 장비에 대하여는 포탈신고시 폐기신고
문5	**장비 양도양수시 필요서류 문의**

답	- 의료장비의 양도 양수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해당 시·군·구에 신고(양도, 이전 등)토록 되어 있는바 시도, 시군구 정보연계로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며, ※ 양도시 : 인터넷 포탈신고시 사용중지구분(폐기,양도,이전,사용중지,기타), 사용중지일자(시군구정보연 활용) - 그 외 의료장비신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약청 정보 활용할 경우, 식약청 의료기기품목허가등" 제외, 양도양수계약서(해당 장비 내역이 표기)
문6	**장비가 오래되서 자료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	- 요양기관에서 설치확인 가능한(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
문7	**의료장비에 센서부착시(업그레이드)신고 방법 문의**
답	- 해당장비의 형식규격을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사본 1부
문8	**장비를 무료로 받았을때 신고방법 문의**
답	- 의료장비 무료로 받았을 경우에는 무상기증관련 확인 서류와 의료장비상세등록의 구입세부사항에 도입형태(기증)으로 표기하여 신고
문9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답	- 의료장비현황 신고시 구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
문10	**- 홈페이지상의 병원정보 검색시 신고된 장비현황이 미반영되어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며 장비입력 처리자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지 여부**
답	- 의료장비 현황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요양기관별 장비세부내역을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일부 8종류(맘모그라피, CT, MRI, PET, 인공신장기, 체외충격파쇄석기, 뇌종양치료기, 골밀도검사기)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음
문11	**치과병원에서 일반 필름이 아닌 디지털로 촬영, 컴퓨터에 저장하는 이 장비가 디지털장비인지, 신고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답	- 일반 필름이 아닌 디지털촬영인 경우에는 구입증빙자료 제출과 형식규격을(일반→디지털) 신고
문12	**의료장비를 양도, 양수받아 최초구입 일자를 알수 없는 경우 구입일자 기재?**
답	- 의료장비의 양도, 양수받은 장비의 최초구입일자는 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일자가 구입일자로 갈음
문13	**호흡기치료장비인 레블라이져 장비를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지?**
답	- 우리원에서 관리하는 장비(홈페이지 참조-의료장비현황)외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호흡기 치료장비인 레블라이져는 신고대상장비가 아님
문14	**장비 신고 시(양도양수의 경우)장비별 세부내역표상 도입일자와 금액기재 요령?**
답	- 의료장비 양도양수의 양도양수계약서의 날짜가 도입일자가 되며 무상으로 기증 받을 시 구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신청
문15	**물에 끓이는 핫팩이 미신고 장비가 맞는지?**
답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된 장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핫팩은 미신고 대상장비임
문16	**불소이온 도포기(F이온 D.C.S) 장비와 JAP Laser장비 신고시 장비번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답	불소이온도포기는 우리원에서 관리하는 장비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문17	**한방장비 신고 시 레이저 조사기는 어떤 장비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되는지?**
답	- 184(레이저침시술기) : 레이저광선을 경혈에 쬐어, 경혈부위에 레이저광선 반응과 전자장의 자극작용이 체내경락 계통에 변화를 주어 고르지 못한 기혈의 순환을 조절하고 생체기능을 촉진시키는 의료기기 - 197(헬륨.네온레이저침시술기) : 레이저치료기의 광섬유 말단에 부착된 핀을 상지의 정맥혈관에 삽입하여 조사함으로써 중풍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장비
문18	**한방장비 물리치료 IR장비를 신고해야 하는지, 적외선치료기신고시 같은 장비가 여러 대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답	한방의 IR장비는 장비번호(199번)에 신고해야하며, 요양기관에서 장비구입 수량만큼 신고해야 함
문19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에서 한방물리치료 청구를 위해 양방에서 신고, 사용하고 있는 적외선기기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답	- 한방물리치료의 적외선조사기(장비번호 199번)에 신고
문20	**동일 대학병원내에서 CT장비를 다른 건물 이동시 신고?**
답	- CT(특수의료장비)의 장비 이동시 신규장비 신청하고 기존에 등록된 장비는 사용중지 신청
문21	**요양기관별 엑스레이 보유현황 정보공개 여부?**
답	- 의료장비 현황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임
문22	**의료장비 업체로 요양기관에서 골밀도장비 구입 시 금액이 너무 비싸서 같은 클리닉 대표자들과 공동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답	- 골밀도장비의 경우 공동구매는 가능하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장비로서 시·군·구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구매대표자들 모두 신고할 수 없으므로 공동이용 신청을 따로 해야함
문23	**의료장비 신고 시 업체에서 무료로 받은 장비에 대해 무상기증 확인서를 받을수 없는 경우(업체가 폐업 등으로 없어질 경우)대체 서류 문의**
답	- 의료장비의 무료로 받은 장비의 경우 무상기증 받은 내역(포탈신고시 신고내용에 표기 등)
문24	**MRI장비 신고시 구비서류 문의**
답	- 특수의료장비는 해당 시·군·구에 신고(양도, 이전 등)토록되어 있는바 시도, 시·군·구 정보연계로 서류를 받지 않고 있음
문25	**한 업체에서 여러 개의 장비를 구입 후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장비신고 시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
답	- 의료장비 신고 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내역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신고장비의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
문26	**양도양수한 장비를 웹으로 신청 시 기재방법 문의**
답	- 의료장비의 양도양수는 양도한 기관은 해당장비의 사용중지 신청, 양수한 기관은 신규장비 등록시 장비상세내역의 구입세부사항에 신·구 구분(중고장비)표기 하여 신고
문27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신고했던 임사병리실 장비들의 구입년도, 제조년월일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
답	- 우리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종합업무→현황변경(장비)→장비보유현황을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문28	**치과의원 방사선장비 중 포터블 장비(입안에 센서를 넣고 촬영하는 장비)도 신고대상인지 문의**
답	- 방사선발생장치의 의한 장비로 시군구에 신고 후 우리원에 포탈신고(장비번호 079)